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

2024. 04. 0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여 중앙대학교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조성하며 중앙대학교 내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해당사자’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2. ‘피해호소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피해호소인’과 여타의 피해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된다.
 - 4. ‘가해당사자’란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및 가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가해지목인’은 ‘가해당사자’중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6. 공동체의 책임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가해지목인’은 ‘피신고인’이 된다.
 - 7.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피신고인’은 ‘가해자’로, 여타 가해당사자들은 ‘가해책임자’로 규정된다.
 - 8. 신고인이란 사건을 직접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대리인이란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 10. 신뢰인이란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피해당사자를 동반하여 사건 과정의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참고인이란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협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제3자를 말한다.
 - 12. 증인이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로,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 13. 최종접수인이란 사건의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 ① 이 규정은 총학생회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 중앙대학교 재학생

2. 중앙대학교 휴학생
3. 중앙대학교 졸업생
4.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학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질적 구성원이라 판단된 자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1. 사건의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가 제1장 제3조의 대상에 속하는 사건
2. 사건의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 둘 중 하나가 제1장 제3조의 대상에 속하는 사건

제4조(분쟁의 해결) 이 규정에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운영위원회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학생회 및 대표자 회의 또는 대책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해석에 있어서 회칙에 별첨된 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

제2장 성폭력의 개념

제5조(성폭력의 개념)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한 행위를 가하는 것
 -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제6조(성적 자기결정권)

- 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해나갈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및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2. 상호 동의가 없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및 성에 관한 대화를 거부할 권리
 3.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 ② 공동체의 대표자는 구성원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성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환경이나 언행은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 된다.
- ③ 공동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사건 예방 및 문화 조성의 책임: 공동체의 대표자는 회원들 사이에 성폭력을 비

롯하여 성차별주의적 언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차별주의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내적·대외적 활동에 힘쓴다. 또한 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 단위별 성평등 내규 및 반성폭력 회칙 작성과 공표 및 적극적 제·개정의 책임: 중앙대학교 공동체의 각 단위 (학과(부), 단과대학, 동아리 등)의 대표자는 성평등 문화의 조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위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성평등 내규 및 반성폭력 회칙을 작성 및 공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를 제·개정하며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 때, 공표하는 회칙 또는 내규의 형식과 그 위계(위치)는 각 단위의 상황에 따른다.

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의 책임: 중앙대학교 모든 공동체 단위의 대표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책임 있게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위하여 후보자는 룰미팅 이전에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인권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수 여부와 이수 강좌 내역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 공고에 게시된다.

2. 사건 처리의 책임: 공동체의 대표자는 회칙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회칙에 따라 책임을 지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사건의 신고)

- ① 사건의 신고란 사건의 발생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의 절차 및 공론화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최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최종 접수자와 신고인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인권센터로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이하 ‘공식절차’라 한다.) 신고 접수 이외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신뢰 가능한 대표자가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③ 공식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식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최종 접수인은 집단적 논의를 통해 피해 당사자(호소인)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체 내에서의 사건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2. 최종 접수인은 인권센터와 인권 관련 자치기구 혹은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2차 가해, 직무 유기, 사적 폭력)

- 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신고·공론화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제13조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2차 가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 당사자와 사건 담당자는 필수적인 조치

이행을 방임하는 직무 유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절차 밖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사적 폭력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리)

- ① 공동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 기타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 및 기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관계당사자들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와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 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3.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4.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할 권리
 5.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 ② 피해당사자는 제9조 제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나 휴식 등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를 받을 권리, 공동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체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절차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특정인과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 ③ 가해당사자는 제9조 제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소명할 권리: 사건의 경위와 맥락에 관해 소명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 ④ 신고인은 사건의 접수에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할 권리, 허락 없이 신상을 유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해결

제10조(신고)

- ①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임한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피해당사자가 피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신고인이 해당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지했다면 피해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③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외면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 최종 접수자는 사건 발생 단위의 대표자(학생회장단, 동아리 회장 등)로 한다.
- ⑤ 성폭력 사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신고 전반의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대리인이 활동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조를 따른다.
1. 사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이는 대리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다.
 2. 사건 당사자들의 반대가 없을 시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사건 전반에 있어서 대리인의 참가를 허가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시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반대 의견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논의, 절차에 따른 의결로 대리인 참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의 양식은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에 따른다.
- ⑦ 신뢰인의 입회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에 있어서만 가능하며, 의사를 표명할 권리 를 일절 가지지 않는다.

제11조(공동체적 해결)

- ①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은 공동체적 토론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성차별적인 인식이나 문화 등 공동체의 잘못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대표자는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 ② 공동체가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사건을 공론장에 상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된 사실과 신고 내용의 개략을 알리고 해결의 절차와 역할분담 등을 논의함을 의미한다.

1. 공개의 범위: 사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단, 최종 접수인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해결의 주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최종 접수인은 사건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사건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해결 절차의 결정: 공동체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 자체가 불가하거나 그 이행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건 해결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③ 회칙상의 최종 접수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속해있는 단위의 대표자이나, 각 단위의 회칙이나 내규 또는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신고를 접수할지의 여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하에 최종 접수자가 결정한다. 최종 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만 접수를 거부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피해당사자의 반대: 신고의 최종 접수자는 접수 이전에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최종 접수자는 피해당사자가 반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인권 침해: 사건 공론화 자체가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최종 접수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최종 접수자에게 있다.
3.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사를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단위는 사건 경위를 소상히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확보하는 절차 중 양쪽 진술이 모두 일관적이고 타당하며 한 쪽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사건의 최종 접수인은 어떤 진술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고 이러한 결정을 공동체 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인준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최종 접수인은 신고 접수 포기의 이유를 명시하여 공동체가 규정한 기간 내에 특정 진술 채택 포기의 이유를 알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신고 반려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다룰 상위 기관 (인권센터 등)에 조속히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해결)

- ① 사건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② 사건 평가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 공동체는 사건이 문제적인지, 문제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공동체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

게 평가해야 한다.

1.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평가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건의 기록: 사건 해결의 주체는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토론에서의 쟁점들을 공식적, 공개적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 이후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동체는 공동의 평가에 기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후속토론, 평가서 및 입장서 발표, 사건에 관한 홍보, 공간 분리 등의 실천적인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
1. 조치의 입안: 조치는 제11조 제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동체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하며 제11조의 ‘공동체적 해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가. 피해자 중심적 해결: 사건 조치 도출의 과정에서 조치 담당자는 ‘피해자 중심적 해결’에 입각하여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사건을 해석할 때 가해자의 의도, 경험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경험, 관점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려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나. 입안의 절차: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조치 도출을 위한 공동체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일시와 진행 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2. 징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제5조, 제8조에 규정된 폭력 또는 직무 유기를 범했을 경우,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사건을 전담하는 대책위원회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사건의 최종 접수인은 공간 분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호소인)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나. 가해자/피해자가 속해 있는 단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 단위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해자 단위는 가해자를 포함한 공동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1) 비공개 사과문
 - (2) 공개 사과문 : 소속 단과대학과(부) 성(姓)을 포함한 사과문을 온·오프라인 게시하는 것을 의미.
 - (3) 학생자치공간 출입금지 : 일정 기간을 특별히 명시할 수 있음.
 - (4) 학생자치행사 제외 : 학생자치기구에서 진행한 사업 및 행사 참여를 금하는 것을 의미.

- (5) 학생자치활동 제외 : 학생자치활동으로 인정되는 집행부, 동아리 등의 활동을 금하는 것을 의미.
3. 조치의 집행: 결정된 조치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추가적 조치: 해결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졌을 때는 사건 해결의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② 공동체적 해결: 접수된 사건은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1. 해결의 목적: 공동체적 사건 해결의 목적은 공동체의 정의와 정의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평등하고 해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2. 공적 해결: 공동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거나 성(性)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 침해는 공적인 문제이다. 공동체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는 사건에 관련해 함께 반성하고 행동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사건 처리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1. 투명성: 사건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공개의 내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과 평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위나 친분, 사회적 편견, 현대적인 사회 상규와 상식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의한 금기 등의 비합리적 요인들이 토론을 가로막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사건 처리는 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회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칙’의 개정 절차 요건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발생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도 적용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

- 해설 -

1. 제1장 제2조 제1항 14의 [해설]

해당 사건의 최종 접수인은 학생회 이외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임시 또는 상설기구 (대책위원회, 단위 별 성평등위원회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 기구에 신고 접수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론화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최종 접수인에게 있다. 총학생회 이외의 공동체, 가령 학과(부)나 동아리 내에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최종접수인의 역할은 해당 공동체의 대표자가 맡는다. 그러나 각 단위는 상황에 맞게 최종접수인의 역할을 할 직책을 따로 두거나 복수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접수인의 지정에 관해서는 각 단위가 정한 바가 회칙에 우선한다. 최종접수인 본인이 가해피의자인 경우 회칙이나 내규 등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공동체 합의를 통해 선출된 직무대행자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 사건 접수 이외의 다른 책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제1장 제3조 제1항의 [해설]

이 회칙의 목적은 중앙대학교 학생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학적 상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학생회원이 아닌 이라도 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인 경우 회칙에 따라 보호받는다.

3. 제1장 제3조 제2항의 [해설]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선의 규범이 있는 경우 해당 회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한 학과(부)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과(부)의 반성 폭력회칙이 총학생회 반성폭력회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생회칙이 학과(부)-단과대학-총학생회 회칙의 순으로 적용 및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규준이 존재할 때는 정의, 인권, 집행의 실효성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다른 규준을 바탕으로 삼되 해당 회칙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4. 제1장 제4조의 [해설]

회칙은 절대적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를 명문화한 규범이며, 문구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따져서 적용하는 것보다 회칙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올바르다. 해당 회칙의 필요성은 성폭력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일종의 매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서로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요소들이 결합된 총체이다. 각각의 문구는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회칙의 전체적인 논리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은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회칙이 기반한 논리와 그것이 담아내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글이다. 학생회칙 본문은 학생회와 회원들의 의무를 규정하며, 해설은 그것이 오독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해를 돋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해설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지만, 회칙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인도한다. 학생회칙을 담당하는 대표자는 조항의 해설을 책임감 있게 해석하여야 한다.

5. 제2장 제5조의 [해설]

제5조의 경우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한 행위, 고정된 성 역할의 강요,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 침해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는 나열된 일련의 행동들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행한 이들을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처벌의 대상임을 전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열된 행동들이 공동체 내 신뢰를 배반하는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사라져야 하는 문화임을 상기시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전술된 행동들이 발생한 당시의 맥락과 서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단편적으로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처벌(분)하는 것은 ‘공동체적 해결’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특정 호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문제 제기가 없더라도 대표자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문제 개선을 위한 집단적 논의 등의 특별한 노력을 실천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즉 제5조(성폭력의 개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즉 성폭력이 공동체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개개인의 ‘예민함’ 또는 ‘유별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폭력적인 문화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과 이를 행하는 대표자들의 책임을 전제한 것이다.

6. 제2장 제6조 제1항의 [해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성적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성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한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차별주의나 호모포비아처럼 다른 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성적 가치관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것은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적 지향·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아웃팅)도 제6조 제1항의 3을 위배한 사례에 해당되므로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것 역시 성적 자기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폭력이 아니라 해도 성적 자

기결정권의 억압과 부당한 제한, 성에 근거한 차별은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꼭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도 성차별주의나 기타 반인권적인 통념에 근거한 언행과 문화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구성원들의 평등과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그를 비판하고 시정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다.

7. 제2장 제6조 제2항의 [해설]

여기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란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징계의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학생 이외의 학내 공동체가 관계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본 학생 회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근거로서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학생회 등의 공동체 대표 단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호소인)와의 논의를 통해 공론화 및 실천적 행동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닌다. 이 때 별도의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론화 및 실천적 행동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본 회칙이 적용되는 학생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제2장 제8조 제2항의 [해설]

2차 가해의 사례 : 이것은 2차 가해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1. 공론화를 저지하거나 민주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 가해당사자나 그 주변인이 피해당사자나 신고인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 또는 협박하는 것
 -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책임자나 구성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
 -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로 피해당사자에게 약속한 사람이 최종접수자에게 신고를 전달하지 않는 것
 - 최종접수자가 임의로 신고를 반려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는 것(11조 4항의 사유는 제외)
 - 사건 해결 절차를 임의로 구상하여 집행하거나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강요하는 것
 - 당사자들과 공동체에게 합당한 사유를 밝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회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단하는 것
 -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정당한 징계를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것
 - 결정된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유보하는 것
- ### 2.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 대한 공격 및 추가적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행위
- 피해의 책임을 피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가해자를 유혹했다’, ‘위험한 곳에

가해자와 둘이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등)

-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등)
- 사건과 무관한 피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사생활을 사건의 성격과 관련짓는 것 ('가해자와 원래 악감정이 있었다.', '원래 성적으로 문란했다.' 등)
- 사건의 주요 경위를 왜곡하여 펴뜨리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을 비난 또는 폭행하는 것,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펴뜨리는 것 또는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진상에 대한 추측을 펴뜨리는 것

9. 제2장 제8조 제3항의 [해설]

직무 유기의 사례 : 이것은 직무 유기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사유를 밝혀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절차 이행을 지연하는 것
- 담당자가 교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채 절차 도중에 휴직하거나 장기 출장을 가는 것
-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에 반드시 나와야 할 사전의 당사자가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 사건에 관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 조치의 집행을 지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10. 제2장 제8조 제4항의 [해설]

명문화된 절차 또는 공동체의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의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사자와 담당자, 공동체에 대해 억압과 폭력 등의 사적인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사적 폭력의 금지를 요망하는 본 내용은 제7조에 명시된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당사자와 공동체 전반에 걸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상기하는 목적의 조항이다.

11. 제2장 제9조 제2항 1의 [해설]

치유와 회복의 권리에 서술된 '공간 분리'는 피해당사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다.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의 공간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기를 포함한 세

부적인 내용은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 이 때, 사건이 최종적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종적인 접수 반려일을 임시 조치의 한계선으로 규정한다.

12. 제2장 제9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설]

9조의 2항과 3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의 권리는 제7조와 더불어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신분의 관계인들은 최종적인 신고 접수 이전, 사건과 관련한 행위 내용을 추정 받는 상태이며 확정적인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는 최종 접수인의 신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9조 2항과 3항은 사건과 긴밀히 연계된 당사자 신분의 관계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그들에 대한 불이익 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기되었다. 이 때, 당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서술이 가해 당사자에 의해 책임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13. 제3장 제11조 제4항의 [해설]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한 최종 신고접수 반려는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신고의 접수에 있어서 관련자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경험, 기호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전술한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와 사건접수기구가 보다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건 경위 또는 관련 내용을 보다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4. 제3장 제12조 제4항 1 가목의 [해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왔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독하는 것은 공동체적 사건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는 가해자 시선 중심적인 통념이 작동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 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2조 4항 1의 가목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장치로, 공동체는 피해자의 맥락에 따라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한 것이다.

15. 제3장 제12조 제4항 2의 [해설]

징계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가해자에 대해 학생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징계 또는 처분을 가할 수 있다는 ‘선택의 보기’를 명시한 것이다. 공동체의 회칙에 따라 징계를 가하는 주체는 학생회, 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집단적 토론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임시 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징계를 가하는 방식과 그 주체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의 회칙과 상황에 따른다.

16. 제3장 제13조 제2항의 [해설]

여기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이란 사건을 단순히 이슈거리로 삼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토론을 통해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와 일부분을 부각시켜 토론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토론으로 공개되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한다.